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면제대상 및 지연이자를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건설공제조합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
로 하도급대금지급의 보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
증 면제대상 및 지연이자율에대한 개정을 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면제대상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경
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반면 원사업자는 하
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
서(통상계약금액의 10%)를 제출케 함으로써(법
적 근거는 없음) 수급사업자가 부도등으로 하도
급계약 불이행시 보상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실
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계
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건
설공제조합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
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신
설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동법 제13조의 2 신설)
에 들어갔다.

이같은 하도급법 개정은

- ▲ 원사업자의 부도시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방지
- ▲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 ▲ 외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하도급업
체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원사업자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
는 일정기준이상 등급을 받아 재무구조가 우수
한 기업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보증을 면제(동
법 시행령 제3조2 신설)하도록 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통해 “각 공제조합에서 실시하
는 재무상태등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경우”에
는 지급보증을 면제토록 고시하고 미이행업체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을 통해 제재키로 했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고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정지급 기일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미지급시 경과기간에 대
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법
정 최고 이자율 연리 25%)를 지급토록 규정(법
제13조5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에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 수준인 연리 18%로 고시했다.

개정된 법령조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권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제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 제1호·제5호의 각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 등 평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등급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각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시한 후 보증 또는용자를 실시할 수 있다.

하도급법 지연이자율

하도급법 제13조제5항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시행에 따른 문답풀이

[1] 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만 발행하는가?

건설공제조합등 공제조합 이외에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하도급대상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면 보증의무는 면제되는가?

- 지급보증의무와 관련된 하도급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원·수급사업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6] 실제로 보증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공 사 사 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액
· 공기 4개월이내,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선급금 20,000,000원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원 ※ 계약금액의 80%
· 공기 10개월(4개월이상),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선급금 20,000,000원, 기성주기 2개월	(100,000,000 - 20,000,000) ÷ 10 × 4 = 32,000,000원 ※ 계약금액의 32%
· 공기 10개월(4개월이상), 하도급계약금액 100,000,000원, 선급금 20,000,000원, 기성주기 3개월	(100,000,000 - 20,000,000) ÷ 10 × 3 × 2 = 48,000,000원 ※ 계약금액의 48%

면제를 인정할 경우 지급보증제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 면제는 1건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3] 건설공제조합의 재산상태 평가 완료시기가 '96년 6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바, 법 시행일인 '97년 4월 1일부터 건설공제조합의 평가완료시까지 보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태 평가를 위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합의 평가가 지연되어 법 시행일까지 등급이 결정되지 않는 원사업자는 동 조합의 평가완료시까지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1997.6.30까지 지연교부에 따른 처벌은 면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평가가 지연된 사업자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음

[4] 원사업자가 수개의 공사를 진행중일 때에는 1개의 보증서로 일괄보증이 가능한가? 1개의 공사에 수개의 수급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도 일괄보증이 가능한가?

하도급법 제13조의2제3항은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

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지급 보증도 유효하나, 다만 매 하도급 계약시마다 일괄보증서 사본을첨부하여야 함

[5] 보증의무를 위반할 때의 제제수단은?

지급보증의무 위반시 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와 법 제25조의3(과징금)제1항제3호에 의해 하도급거래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등의 제재가 가능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의(중소기업자의 범위등)</p> <p>①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하고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건축설계업이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조의 2(중소기업자이 범위등)</p> <p>①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적전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p> <p>③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p> <p>④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이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p>

현행	개정
<p>② 법 제2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2. (생략)</p> <p>③ 법 제2조제8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 ~4. (생략)</p> <p>5. 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p> <p>6. (생략)</p> <p>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p> <p>8. ·9. (생략)</p> <p><신설></p>	<p>⑤ 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p> <p>⑥ 법 제2조(정의)제9항-----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⑦ 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 ----- -----</p> <p>1. ~4. (현행과 같음)</p> <p>5. 폐기물관리법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p> <p>6. (현행과 같음)</p> <p>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이 등록)----- -----</p> <p>8. ·9.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p> <p>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p> <p>2. 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p> <p>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p> <p>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p> <p>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p> <p>②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p>

행	개																										
<p>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등의 위탁을 받고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p> <p>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p> <p>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단체</th> <th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거래분야</th> </tr> </thead> <tbody> <tr> <td>1. (생략)</td> <td></td> </tr> <tr> <td>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td> <td>법 제2호제8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td> </tr> <tr> <td>3. ~ 6. (생략)</td> <td></td> </tr> <tr> <td>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td> <td>소프트웨어 개발의 위탁</td> </tr> <tr> <td>8. (생략)</td> <td></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p> <p>③ 건설업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생략)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법 제2호제8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 6. (생략)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개발의 위탁	8. (생략)		<p>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p> <p>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p> <p>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p> <p>①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단체</th> <th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거래분야</th> </tr> </thead> <tbody> <tr> <td>1. (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2. 건설산업기본법 -----</td> <td>법 제2호제9항(정의)제1호 -----</td> </tr> <tr> <td>-----</td> <td>-----</td> </tr> <tr> <td>3. ~ 6. (생략)</td> <td></td> </tr> <tr> <td>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td> <td>소프트웨어사업 -----</td> </tr> <tr> <td>8. (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p>② ----- ----- 건설산업기본법 -----</p> <p>③ 건설산업기본법 ----- ----- -----</p>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2호제9항(정의)제1호 -----	-----	-----	3. ~ 6. (생략)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	8. (현행과 같음)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생략)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법 제2호제8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 6. (생략)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개발의 위탁																										
8. (생략)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2호제9항(정의)제1호 -----																										
-----	-----																										
3. ~ 6. (생략)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제12조(분쟁의 조정등) <신설></p> <p><신설></p> <p>① ~ ③ (생략) <신설></p> <p><신설></p>	<p>제12조(분쟁의 조정등)</p> <p>① 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⑤(현행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음)</p> <p>제13조의2(자문위원)</p> <p>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p> <p>제14조의2(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등)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